



대법원 지방세관련 판례

심 영 택

대법원 조사관실 행정자치부파견 사무관

1. 해상에 설치한 돌핀 구조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에 해당하는지 여부¹⁾

《개 요》

□ 당 사 자

-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 ○○시멘트 주식회사
- 피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 사건개요

- 원고는 1996. 2. 14. 국유지인 인천 중구 ○○동 7가 120 대 29,075.2㎡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시멘트의 입하·저장 및 출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창고시설(시멘트유통시설)을 신축하면서 위 부지의 지목을 변경한 다음 위 부지에 1만t급 시멘트 저장조(貯藏槽 : Siro) 4기(이하 “이 사건 저장조”라 한다)를 건설하고, 이에 부착·장착되어 사용하는 동력장치·바스켓 엘리베이터(Basket Elevator)·에어 슬라이드(Air Slide)·포장장치·출하장치 등(이하 “이 사건 하화설비”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1) 위 대법원선고와 달리 이 사건과 관련한 제1심 판결(인천지방법원 1999. 4. 9. 선고 98구2174 판결)에서는 “이 사건 돌핀은 소정의 잔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현

행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7호의 규정에 서도 잔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위 대법원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의 잔교를 판단함에 있어 참고가 되리라 생각된다.



- 또한, 원고는 인천항만부지 남측 호안의 전면 해상에 1만급 선박 1척이 계류할 수 있는 계선안(繫船岸)을 건설하기 위하여 쇄말뚝(Pile)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Contrete)로 상부시설을 한 돌핀스판(Dolphin Span) 7기(이하 “이 사건 해상구조물”이라 한다)를 축조하고, 그 사이를 철판으로 서로 연결하는 가교공사를 한 다음, 이 사건 해상구조물로부터 이 사건 저장조까지 시멘트를 운반하는 시설인 크레인(Crane)·입하장치·제어조절장치·벨트 콘베이어(Belt Conveyor)·수하구동부시설 등(이하 “이 사건 운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 원고는 총공사비에서 ① 위 부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포장공사비 금 663,319,266원과 조경공사비 금 59,454,180원, ② 이 사건 하화설비의 취득가액 금 3,540,225,052원, ③ 이 사건 해상구조물의 취득가액 금 5,745,433,941원 및 ④ 이 사건 운반시설의 취득가액 금 4,095,943,865원을 제외한 금 4,104,541,551원(= 이 사건 저장조 취득가액 금 3,665,573,812원 + 사무실 등 건물 취득가액 금 438,967,739원)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금 82,090,83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8,209,080원을 1996. 3. 15.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 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항만부지 지목 변경에 따른 포장공사비 및 조경공사비는 지방세법 소정의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상구조물과 이 사건 운반시설은 지방세법 소정의 건축물 중 잔교(棧橋)에 해당하며, 이 사건 하화설비는 이 사건 저장조의 종물로서 지방세법 소정의 건축물 중 저장조 또는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 중 ‘기타 승강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7. 12. 7. 위 신고누락된 위 ①②③④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금 338,505,02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31,029,620원을 부과(추징)하였다.
- 그 후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은 위 ① 부분 취득가액 합계 금 722,733,446원에 대하여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감액경정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98. 4. 21. 취득세를 금 321,158,46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금 29,439,52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의 추징처분 중 감액한 이후의 것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관련규정

- 지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5항·제111조 제3항
- 지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 그 후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은 위 ① 부분 취득가액 합계 금 722,733,446원에 대하여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감액경정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98. 4. 21. 취득세를 금 321,158,46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금 29,439,52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의 추징처분 중 감액한 이후의 것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관련규정

- 지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5항·제111조 제3항
- 지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 심급내역

- 대법원 : 상고 모두 기각
- 서울고등법원 2000. 5. 31. 선고 99누7809 판결 : 원고일부승
- 인천지방법원 1999. 4. 9. 선고 98구2174 판결 : 원고승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5739판결[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라 함은 계곡을 가로질러 걸쳐놓은 구조물 또는 배를 접안시키기 위하여 물가에 만든 구조물 즉 육지에서 뻗어 나오거나 육지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반드시 그것이 해안선에 직접 접하여 설치된 구조물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시멘트유통기지를 조성하면서 시멘트 운송 선박을 계류시키고

선박으로부터 시멘트유통기지로 시멘트를 운반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함에 있어 그 지역의 조수간만의 차로 인하여 육상에서 바로 연결되는 다리 형태의 잔교를 건설하지 못하고 해상에 선박 접안시설인 이 사건 해상구조물을 설치하고 여기에 이 사건 운송 시설을 연결하여 이 사건 해상구조물에 계류한 선박으로부터 육상으로의 시멘트 운송·하역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해상구조물은 시멘트 운송 선박을 부두에 직접 접안하지 아니하고 해상에 정박한 상태로 하역하기 위하여 부두로부터 약 52m 떨어져 있는 해상에 설치한 것으로서, 하저에 쇠파이프(pile)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견고한 상부시설을 한 돌핀스판 7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돌핀스판 7기는 하역작업을 위한 작업대 1기, 정박한 선박을 옆에서 받쳐주는 접안대 2기, 정박한 선박의



유동을 막기 위하여 선두와 선미를 줄로 매어두는 정박대 4기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운반선의 선원이나 원고 회사의 직원이 시멘트 운송 선박의 입·출항시에 각 구조물을 고정시키는 장치에 줄을 매거나 풀기 위하여 이동하도록 위 각 구조물 사이에 철판 가교를 설치하여 놓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해상구조물은 그 구조·용도 및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의 하역이 편리하도록 해상에 설치한 구조물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잔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잔교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크레인 등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크레인(crane)은 배에 실려 있는 분말상태의 시멘트를 벨트 컨베이어(belt conveyor)로 옮기는 호스를 설치·운반하는 시설이고, 입하장치는 작업대 위에 설치된 집진장치 및 그 부대시설이며, 제어·조절장치는 작업대에 설치된 기계를 제어·조절하는 시설이고, 벨트 컨베이어는 선박에서 하역한 시멘트를 이 사건 저장조의 밑 부분까지 운송하는 시설로서, 이것들은 작업대에서 저장조까지 또는 공정과 공정 사이를 인력 대신 운반하는 시멘트운반기계

설비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크레인 등은 분말상태의 시멘트를 저장조로 보내기 위한 운반시설 또는 유통시설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잔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잔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이 사건 바스켓 엘리베이터 등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에어 슬라이드(air slide)는 시멘트를 저장조와 저장조 사이에, 또는 바스켓 엘리베이터(basket elevator)에서 저장조로 공기를 이용하여 이동시키는 장치이고, 바스켓 엘리베이터는 벨트 컨베이어에 의하여 저장조의 밑 부분까지 운송된 분말상태의 시멘트를 저장조에 배분하는 장치이며, 그 밖에 동력 및 포장, 출하장치 등은 분말상태의 시멘트를 외부로부터 저장조에 입고하고 외부로 출하하거나 포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장치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바스켓 엘리베이터 등은 저장조와 작업대 사이에 연결되어 시멘트를 운반하거나 포장하기 위한 별개 독립의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로서, 시멘트나 화학약품 등의 물품을 화학적 변화나 풍우로부터 보호하면서 보관·저장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물인 이 사건 저장조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 또는 중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바스켓 엘리베이터 등을 위 시

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저장조의 일부 또는 위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 승강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저장조 또는 기타 승강시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이하생략)

※ 관련법령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5조의2 (건물과 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 계기한 것으로 한다.>

1. 건물 : 주택·점포·사무실·공장·창고·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

는 것.

2. 건축물 :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텐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 잔교·도크·조선대·송유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옥외주유시설·가스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옥외가스충전시설·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및 복개설비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제76조 (특수한 부대설비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물과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건물 및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단독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것을 제외한다.

1. 승강기(에레베타·에스카레타 기타 승강시설). (이하생략)

2. 지방세법 제24조(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사업의 양수인」, 「사업의 포괄적 이전」의 의미

《개 요》

□ 당사자

- 원고(피상고인) : ○○산업개발 주식회사
- 피고(상고인) : 충청남도 ○○군수

□ 사건개요

- 원고는 골프장 운영업 및 관련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6. 9. 20. 설립된 법인으로, 1996.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소외 ○○○컨트리클럽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소유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붙여진 충남 ○○군 ○○면 ○○리 192외 127필지와 그 지상건축물(이하 이 사건 제1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수가 금



41,645,100,000원으로 최고가매수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2. 낙찰허가결정을 받은 후 같은 해 11. 9. 낙찰대금을 완납하였고, 같은 해 9. 24.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 중 이 사건 제1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집기비품, 차량, 기계장치 및 공구 등 (이하 이 사건 제2물건이라 한다)을 금 28,355,000,000원에 별도로 매수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위 ○○○회사의 사업을 양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1998. 4. 7. 위 ○○○회사가 체납한 취득세 금 4,005,687,310원(가산금 및 증가산금 포함)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관련규정

- 지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 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1조

□ 심급내역

- 대법원 : 원고패(과기환송)
- 대전고등법원 2000. 4. 28. 선고 99누1296 판결 : 원고승(항소기각)
- 대전지방법원 1999. 10. 29. 선고 98구2882 판결 : 원고승
- ※ 환송판결 : 대전고등법원 2002누 1289 : 2003. 6. 3. 현재 계류 중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095 판결[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96. 9. 20. 골프장 운영업 및 관련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같은 달 23. 대전지방법원 95타경27912호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대상 목적물인 소외 ○○○컨트리클럽 주식회사(다음에는 ‘○○○회사’라 쓴다) 소유의 충남 ○○군 ○○면 ○○리 192 외 127필지와 그 지상 건물 및 구축물(다음에는 ‘제1물건’이라 쓴다)에 대하여 금 41,645,100,000원을 매수자로 하는 최고가매수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 2. 낙찰허가결정을 받은 후 같은 해 11. 9.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제1물건을 취득한

사실, 그리고 같은 해 9. 24. ○○○회사로부터 그 회사 소유의 부동산 중 제1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집기비품,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및 공구기구, 기타 장비 및 설치물 등과 ○○○회사의 영업권(골프장 운영권), 상호권(○○○컨트리클럽), 허가권(체육시설업) 등의 무체재산권(다음에는 ‘제2물건’이라 쓴다)을 금 28,355,000,000원에 별도로 매수하면서 ○○○회사와 사이에 ○○○회사가 미납한 충청남도지역발전협력기금 20억원, 미지급 퇴직금 약 4억원, 미지급 렌탈료 약 6억원 및 미납 화재보험료 약 1억원은 그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 원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또한 위 1996. 9. 23.자 경매가 유찰되거나 그 기일이 연기될 경우 본계약의 관련조항은 자동으로 연기되는 것

으로 하며, 경매가 취소되거나 경매의 낙찰자가 원고가 아닌 경우는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본계약을 무효로 하고 매매대금 중 기지급된 금액은 즉시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12. 21. 충남도지사에게 회원제 골프장업을 목적으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다가 심의결과 관계 규정상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1997. 1.경 그 승인신청을 취하한 후 같은 달 27. ○○○회사의 승계확인서를 첨부하여 체육시설업 등 승계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2. 5. 그 승계신고가 수리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2. 6.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게 된 근로자 106명 중 사직을 희망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05명을 신규 채용 형식으로 다시 채용하였다는 요지의 사실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영업의 일부만의 양수라든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한 재산의 양수의 경우는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소정의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의 양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 있어서 제1물건의 취득가액이 제2물건에 비하여 100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점, 제2물건의 매매는 원고가 제1물건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점, 원고가 제1물건을 최고가로 매수 신청한 연후에 ○○○회사와 사이에 제2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1, 2물건의 취득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제1물건을 낙찰받게 됨을 계기로 골프장을 운영하고자 ○○○회사로부터 제2물건을 매수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사업양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가 되는 것은 제1물건의 취득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제1물건을 ○○○회사와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는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이상, 원고가 ○○○회사의 체육시설업을 승계하였다거나 골프장 상호 및 운영권을 인수하고 종업원 고용을 승계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회사의 사업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회사로부터 제2물건을 매수한 것은 ○○○회사의 골프장 운영업의 일부의 양수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회사의 사업을 양수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1, 2물건의 취득을 통하여 ○○○회사의 사업을 양수하였다고는 할 수 없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회사의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회사가 체납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지방세법 제24조 제1항은 ‘사업에 관하여 양도양수일 현재 양도인에게 부과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써는 그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서 “양도인”이라 함은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자를 말하며, “양수인”이라 함은 양도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종목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규정 중의 '사업의 양수인'이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수단의 조직적 경영단위로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기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으로서 사회통념상 사업장의 경영자로서의 양도인의 법적 지위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변동이 인정된 양수인을 의미하고(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누803 판결, 1989. 2. 14. 선고 88누1653 판결 등 참조), 이 때 '사업의 포괄적 이전'이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1892 판결, 1995. 9. 15. 선고 94누8303 판결 등 참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려는 의도로 양수인이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실질상 매매에 해당하는 임의경매 집행절차에 의하여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나머지 사업용 자산,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의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연달아 취득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볼 상황이라면, 이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법원의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회사의 주된 사업용 자

산인 제1물건에 대한 최고가매수신청을 한 1996. 9. 23.로부터 불과 3일 전에 ○○○회사가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골프장 운영업 및 관련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그 최고가매수신청을 한 바로 다음 날인 같은 달 24. ○○○회사와 사이에 나머지 모든 사업용 시설과 영업권, 상호권, 허가권 등인 제2물건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골프장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충청남도지역발전협력기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렌탈료 및 미납 화재보험료 등 약 31억원 상당의 채무까지 인수하기로 하고, 그 경매가 취소되거나 원고가 제1물건을 낙찰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여 제1, 2물건의 인수를 통일적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제1물건을 낙찰받아 취득함에 따라 그 매매계약도 정상적으로 이행되었고, 원고는 ○○○회사의 체육시설업 등 승계신고를 하는 한편 ○○○회사의 기존 직원 중 사직을 희망한 1명을 제외한 모두를 신규채용 형식으로 그대로 인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회사가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골프장 운영업을 같은 장소에서 경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1, 2물건의 인수 경위, 인수 내용 및 그 후의 경과 등의 이 사건에 특유한 사실관계에서는 원고가 ○○○회사의 모든 사업용 자산 및 영업권, 상호권, 허가권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포괄적인 승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24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이 견해를 달리한 나머지 원고가 제1, 2물건의 취득을 통하여 ○○○회사의 사업을 양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단정한 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사업양수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고 그런 취지가 담긴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 관련법령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 사업에 관하여 양도양수일 현재 양수인에게 부과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써는 그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서 “양도인”이라 함은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자를 말하며, “양수인”이라 함은 양도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종목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등>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1조(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5...41(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한다.

1. 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
2.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3. 보험업법에 의한 자산 등의 강제이전의 경우



3. 착오에 의한 경감과세와 신의성실원칙

《 개 요 》

□ 당 사 자

- 원고(상고인) : 백○○산업개발 주식회사
- 피고(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사건개요

- 원고는 1973. 11. 26.부터 서울 강남구 ○○동 40 대 13,1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해 왔는데, 1975. 12. 8. 서울특별시고시 제200호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가 이루어졌다.
- 피고는 강남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였고, 나아가 1995. 1. 1.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의 시행으로 불균일과세조례가 폐지된 후에도 이 사건 토지가 1998. 1.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38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세감면조례 제13조 및 위와 같이 전문개정된 후의 세감면조례 제15조에 규정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와 같이 과세표준액을 경감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였다.
- 그러다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개정전 세감면조례 제13조와 개정후 세감면조례 제15조에 규정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종합토지세액 등을 다시 산출한 다음, 1999. 12. 10. 원고에 대하여 다시 산출한 종합토지세액 등에서 이미 부과, 징수한 종합토지세액 등을 차감한 세액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관련규정

- 강남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995. 1. 1. 강남구세감면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등

□ 심급내역

- 대법원 : 원고패(심리기각)
- 서울고등법원 2001. 11. 20. 선고 2001누6298 판결 : 원고패(항소기각)
- 서울행정법원 2001. 4. 6. 선고 2000구38325 판결 : 원고패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738 시장남구세감면조례(아래에서는 “세감면조례”라고 한다) 제13조와 1998. 1. 9. 전문개정된 세감면조례 제15조는 종합토지세 경원심이, 1995. 1. 1.부터 시행된 서울특별 감 대상 토지를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된 “공공시설”용 토지로 한정하고 있고,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학교용지로 지정되었지만 학교는 위 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른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의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합토지세 경감 대상 토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세감면조례가 종합토지세 경감 대상 토지를 구 도시계획법상 공공시설로 한정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종합토지세 경감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거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원심이, 피고가 세감면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 강남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경감하여 오다가, 세감면조례가 시행된 뒤 학교용지가 종합토지세 경감 대상 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원고에 대하여 경감된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하여 온 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종합토지세 경감 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련법령

○ 강남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995. 1. 1. 강남구세감면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조 (불균일과세)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도로·공원·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강남구세감면조례(1998. 1. 9. 조례 제38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 제13조

제13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0. 서울특별시강남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 강남구세감면조례(1998. 1. 9. 조례 제 383호로 전문개정된 전) 제15조

제15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 (공공시설) 법 제2조 제1항 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광장, 2. 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3. 철도, 4. 하천, 5. 운하, 6. 항만, 7. 공항, 8. 녹지, 9. 운동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10. 공공공지, 11. 수도, 12. 하수도, 13. 공동구, 14. 공동묘지(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15. 화장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16. 저수지(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17. 방풍설비, 18. 방수설비, 19. 방화설비, 20. 사방설비, 21. 방조설비, 22. 우수지시설

※ 참고사항

학설, 판례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이론에 따르면,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②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③ 납세자가 신뢰에 기한 어떤 행위를 하였을 것,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의이익이 침해되었을 것 등으로서²⁾, 이 사건의 경우 세감면조례가 시행된 후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착오로 인하여 과소한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데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가 과세표준 경감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2) 사법연수원, 「조세법 총론」, 2002